| 의 안번호 |  | 제 | 호 |  |
| :--- | ---: | :---: | :---: | :---: |
| 의 | 결 | 2006 년 | 월 | 일 |
| 연 | 월 | 일 | (제 | 회) |


| 제 | 출 |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  |
| :--- | :--- | :--- | :--- | :--- | :--- |
| 제 <br> 연 | 월 | 출 <br> 일 | 2006년 | 2 월 | 일 |

## 충청북도교육청 항정기구 설치조려 일부기정조려안

| 의안 | 394 |
| :--- | :--- |
|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6. 2 . .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미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고, 2006. 1. 12.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북 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무주요내용
가. 부교육감의 직급을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 밑에 두는 부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다.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 괴신증평교육청"으로 함(안 별표2, 별표4)

ㅁ 개정조례안 : 붙임

밈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보조•보좌기관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제 5 조를 제 5 조의 2 로 하고,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부교육감) (1)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2)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 개 | 안 |  |
| :---: | :---: | :---: | :---: | :---: | :---: |
|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보좌기 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 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직속 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 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br> <신 설> <br> 제5조 (국의설치) 충청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br> [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  |  | 제2조(보조 • 보좌기관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br>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br>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br>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br> 제5조(부교육감) (1)충청북도 교육 •학예에 <br>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br> (2)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br> 제 5 조의2 (현행 과 같음) <br> [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  |  |
| 간ㅎㄹ 교 육칭 | 도서관명 | 위 치 | 간 힐쑈 육 청 | 도서관명 | 위 치 |
|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충청북도괴산교육청 |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 < 생 락 < 생 락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충청북도괴신증평교육청 |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 < 생 락 |
|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 |  |  |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 |  |  |
| 관 할 교 육 청 | 야영장명 | 위 치 | 관 할 교 육 청 | 야영장명 | 위 치 |
| 충청북도괴산교육청 | 청 천 학생야영장 | <생 락 | 충칭북도괴신증평교육청 | 청 천 학생야영장 | <생 락 |

## 관계법령 발췌서

## 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5 볍률 제 7340 호)

제33조 (보조기관) (1)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 인(인 구 800 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 만명 이상인 시•도는 2 인)을 두되, 그 직급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5>
(2)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 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3)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0>
(4)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교육감 2 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 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5>
(5)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 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제 33 조의 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1)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2)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 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 행한다.
(3)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교육감이 2인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5.1.25>
(5)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의 대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 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1.25>[본조신 설 2004.1.20]

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6.1.12 대통령령 제19246호) 제21조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교육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 시•도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 :--- | :---: |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 괴산군 | 괴산군, 증평군 |

